

## 1. 주업종 확인 서류 및 매출확인서류 관련

## Q1. 주업종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업태)에 '제조업'외에 다른 업태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신 경우, 최근 1년 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업은 주업종이 '제조업'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Q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뿐입니다. 그래도 주업종 확인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2. 업종확인서류는 2개 이상 업태를 영위하는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만 표기되어 있으신 분들은 주업종확인서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Q3. 창업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최근 1년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3.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매출신고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3년 이후 창업하여 제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붙임5]의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관련

**Q1.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도 포함이 되나요?**

A1. 대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등기된 임원 및 일용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Q2.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A2. **직전 사업연도 12개월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창업 등의 이유로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일(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 혹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3.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내면 되나요?**

A3. 법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①~④\* 중 택1**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 상 대표자 본인 업체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가있는 경우의 제출 서류

단, '무보수'법인대표로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Q4.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유무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제출 서류 상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의 서류(4개 서류 중 택 1)와 대표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관련

**Q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상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A1. 본 사업은 '소기업(소상공인)'이라 표시되어 있는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다른 분류임을 알려 드립니다.

\*소기업: 대상 아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Q2.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추가로 내야할 확인서류가 있을까요?**

A2.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신 경우 '매출확인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와 **주업종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상 제조 포함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1. 유효기간 만료 전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3. 신청업체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4.기타

**Q1.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주소와 공장 주소가 다릅니다. 신청이 되나요?**

A1. 본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무실주소와 공장 주소가 다른 상황에서는 주소지와 설치희망 장소를 다르게 기재하시는 것을 인정해드립니다. ※공장등록증 확인必 이사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제출한 회사정보(회사 전경 등)와 선정 이후 회사정보(사업수행 위치 등)가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공동대표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A2.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모두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Q3. 신청하려는 업체 직원(혹은 대표자가족)입니다.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A3. 본 사업은 '**대표자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상 신청자명과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명이 다를 시 탈락 처리 됩니다.

**Q4. 본점의 지점으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할까요?**

A4.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해당 지점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 신청하는 업체기준으로 필요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납세증명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는 경우 등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과 지점이 별도 표기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5.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원 가능할까요?**

A5.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은 **한 대표자당 한 사업장만** 지원가능합니다. 동일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 불가능합니다.

**Q6. 선정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A6. 요건검토와 서면평가 진행은 서류마감일 이후 한 달 내외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결과발표를 포함한 진행 상황은 **대표자연락처**로 안내가 갈 예정이며 소상공인마당\* 신청내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경영성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상단 '신청내역'클릭→'상세보기'에서 확인